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채현일·양부남·김성회

장철민 • 이재강 • 한병도

강득구 · 신정훈 · 강훈식

이소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 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, 특히 각급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 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.

이에,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선거일 전 90일"을 "선거일 전 90일(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1년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

다만,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	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	
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	<u>선거일 전 90일(각</u>
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	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
다만,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	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1년)
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	
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	
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	
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	
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	
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	
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또	2.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
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	2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	

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 다. <u><단서 신설></u>

다만,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③ ~ ⑤ (생 략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